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1992. 5. 8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문교사회위원회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2년 4월 28일

○ 회부일자 : 1992년 4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78회 임시회

○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92. 5. 6)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보사환경국장 정 태 현)

가. 제 안 이 유

정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피임약제기구(먹는 피임약, 콘돔, 자궁내장치)중 먹는 피임약 보급수수료를 인상하고 자궁내 장치의 수수료를 신설하여 가족계획 재활용 사업비와 피임시술 부작용 사후관리비로 사용코자 함.

나. 주 요 골 자

○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 인상.

- 먹는 피임약 (1개월분) : 200원 → 230원

- 자궁내장치 시술 (1건) : 무료 → 2,000원

3. 검토 의견

(전문위원 김영만)

정부에서 보급하고있는 가족계획용 약제기구의 보급수수료중 먹는 피임 약 1개월분을 200원에서 23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자궁내장치 시술은 무료로 보급하던 것을 수수료 2,000원씩 받기로 신설한 것은 재활용 사업비 확보와 피임시술 부작용 사후관리비로 사용토록하고 가족계획대상자에 대하여 일부 경제적 부담을 시키므로써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과 이에 따른 조례의 字句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 요 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보고서 첨부 서류

가. 개정 조례안

나. 신.구문 대비표